

의안번호	2207821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5. 4. 1.
추계번호	25A050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전기가스열위원회(중앙행정기관)로 격상하고 소속 위원에게 인건비 및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9,000만원, 2030년 10억 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억 3,700만원(연평균 9억 4,8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7까지 신설)	890	918	947	977	1,009	4,737	948
－ 상임위원등 보수	800	828	857	887	919	4,289	858
－ 비상임위원 수당	30	30	30	30	30	150	30
－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60	60	60	60	60	298	60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 위원회를 설치(제1항)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①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②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명령, ③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④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등으로 함(제2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봄(제3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 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제4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3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①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허가·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②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 ③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의무규정
	안 제10조의4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 공급자와 사용자 등은 ①공급자 간의 이해관계, ②공급약관 및 규정, ③전기설비 장애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④에너지 사용 요금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제2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재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서의正本(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4항)	
	안 제10조의5 (전기가스열위원회 지도·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기가스열감독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지도·감독	의무규정
	안 제10조의6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함(제4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7 (위원장)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안 제10조의8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제1항)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제2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12 (회의)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안 제10조의14 (조사 및 의견청취)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10조의15 (전문위원회)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10조의16 (사무처의 설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3조의2 (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며, 감독원은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안 제13조의3 (사무소)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제1항)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안 제13조의5 (임원)	감독원의 임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함(제1항)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안 제13조의6 (업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및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구조개편, ②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 ③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	의무규정
	안 제13조의7 (예산 등)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감독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감독원의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친 후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항) 감독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 심의·결에 따름(제3항)	의무규정
	안 제13조의8 (비용부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3조의9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가스열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0조의2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 (일부 추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상임위원 등 보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안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겐 정무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그 외 상임위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정지출 증가 예상
	안 제10조의3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비상임위원 수당) 안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현행 전기위원회(9명)보다 최대 위원정수가 많으므로, 비상임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및 안전 검토 수당 지출 증가 가능
	안 제10조의4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안 제10조의15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사업 등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는 현행 전기위원회와 달리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전기·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므로 전문위원회의 수나 위원 정수가 증가하여 수당 지출 증가 가능
	안 제10조의5 (전기가스열위원회 지도·감독)		- (사무처 직원 보수) 안 제10조의16은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전기위원회의 확대 개편으로 사무처의 구성 규모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재정지출 증가 가능
	안 제10조의6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 (기본경비) 소속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기본경비 또한 이에 수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 제10조의7 (위원장)		- (주요 사업비) 전기가스열위원회로의 개편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사업비 지출 증가 가능 * 안 제10조의4에 따른 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당사자 간 재정(裁定)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기존 상태와 비교할 경우 해당 업무에 지출되는 사업비 총액이 증가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안 제10조의8 (위원의 임기)		위 재정수반요인 중 사무처 직원 보수,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경우 아래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①상임위원 등 인건비, ②비상임위원 수당, ③전문위원회 위원 수당만을 추계 대상으로 함 － (사무처 직원 보수)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처 직원 보수 지급 증가액은 사무처 정원 중 순증 인원에 직급별 인건비 평균 단가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무처 정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유관 부서로부터 이체받을 인원과 순증 인원의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으며, 직급별 분포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부서 기준정원 * [참고자료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원 변동 내역¹⁾ － (기본경비)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액은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인건비 증가액에 기본경비 증가액을 연동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순증 규모를 알 수 없어 보수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기본경비 증가액 또한 추계하기 어려움 － (주요사업비) 개정안에 따라 ①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裁定) 등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 점, ②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확대된 지원조직(사무처)을 기반으로 독립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사업비와 비교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업비가 순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신규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10조의12 (회의)		
	안 제10조의14 (조사 및 의견청취)		
	안 제10조의15 (전문위원회)		
	안 제10조의16 (사무처의 설치)		
3	안 제13조의2 (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	안 제13조의2에 따라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 때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전기가스열감독원의 정원과 사업 규모, 국가의 출연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13조의3 (사무소)		
	안 제13조의5 (임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안 제13조의6 (업무)		
	안 제13조의7 (예산 등)		
	안 제13조의8 (비용부담)		
	안 제13조의9 (업무의 지도 및 감독)		
4	안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권한을 전기가스열감독원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위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소속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등”)의 보수, ②비상임위원의 수당, ③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10조의2제3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등 보수의 경우 위원장(1명)에게는 장관급, 부위원장(1명)에게는 차관급, 상임위원(3명)에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적용하며,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1)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보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보수 예산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①당초 51명 규모의 조직으로 현행 전기위원회 사무국(9명)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②행정안전부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이관받아 정원 이체 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례에 준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제시함

- 안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정수와 부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계를 위하여 총 위원정수는 15명이고, 부위원장은 1명이며, 상임위원은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각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인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의 수를 가정
- 안 제10조의6제4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가스열위원회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²⁾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에게는 장관급, 부위원장에게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같은 항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위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같은 조 제2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1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공무원이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에서 기존에 받던 봉급 및 수당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위원으로 임명될 사람의 자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봉급 외의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정근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의 경우 장·차관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종 정액수당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외의 다른 수당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및 상임위원(고위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단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를 준용하되, 봉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2020.2.4. 개정, 2020.8.5. 시행)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지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비상임위원 수당과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서 기존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뺀 금액을 추계하며, 수당으로는 참석 수당과 안전검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기존 전기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석 수당과 안전검토 사례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비상임위원의 수는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위원정수 15명에서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및 상임위원(3명)을 제외한 총 10명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수는 총 71명(7개 전문위원회)으로 가정
 - － 현재 전기위원회는 3개 전문위원회(법률분쟁조정,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력계통 및 신뢰도)를 운영 중이며, 위원정수는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 10명,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10명,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 11명으로 총 31명임³⁾
 - － 본 추계에서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중 전기 분야의 경우 기존 전기위원회의 전문위원회(3개)와 위원정수(31명)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스 및 집단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문위원회를 각각 2개씩 신설하되, 전문위원회마다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인 것으로 가정
 - * 가스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 각각 신설되는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고려하여 법률분쟁조정⁴⁾과 사용자보호⁵⁾ 전문위원회로 함⁶⁾

3) 자료: 전기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rec.go.kr/intrcn/selectOrgcht.do#orgTab>)

4) 안 제10조의2(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5.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5) 안 제10조의2(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6) 현행 전기위원회의 경우 법률분쟁조정 및 소비자보호 외에도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가 있으나, 안 제10조의2에 따른 가스 및 집단에너지 분야의 소관 사무 중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2개의 전문위원회만 신설하는 것으로 함

[표 2] 전기가스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정수 가정

(단위: 명)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정수
전기	법률분쟁조정	10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10
	전력계통 및 신뢰도	11
	소계	31
가스	법률분쟁조정	10
	사용자보호	10
	소계	20
집단에너지	법률분쟁조정	10
	사용자보호	10
	소계	20
합계		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기가스열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5회,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로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회의 횟수는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2024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가정⁷⁾
 -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⁸⁾에 따르면 2024년 전기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5회,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로 연평균 2회 개최되었으므로, 이를 가스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함

- 7)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존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가스 및 집단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등 소관 사무가 확대되어 전기위원회와 비교할 때 전체회의의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최근 3년간 전기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함
- 8)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모든 전문위원회의 개최 내역이 없고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경우 2023년에도 개최 내역이 없는 등 연도별로 실적이 상이하나,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를 위하여 2024년의 평균 개최 실적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단위: 회)

구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력계통 및 신뢰도
2022	16	0	0	0
2023	15	3	0	6
2024	15	2	1	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⁹⁾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참석 수당 15만원¹⁰⁾, 안전검토 사례비 40만원¹¹⁾으로 가정
 - 전기가스열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모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의 수와 연간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임위원등 보수

- 상임위원등의 보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별로 봉급과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을 더하여 산출하며, 2026년 8억원, 2030년 9억 1,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억 8,900만원(연평균 8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원장(1명)의 보수는 2026년 1억 7,300만원, 2030년 1억 9,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억 2,400만원(연평균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부위원장(1명)의 보수는 2026년 1억 6,500만원, 2030년 1억 8,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억 8,300만원(연평균 1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0)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는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참석 수당(기본) 최대 금액을 반영하여 15만원으로 가정

11)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안전검토 사례비를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40만원으로 가정

- 상임위원(3명)의 보수는 2026년 4억 6,200만원, 2030년 5억 3,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억 8,200만원(연평균 4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상임위원등 봉급 및 수당 단가 추계(2025년 기준)

(단위: 천원)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고위공무원)
봉급 단가		150,273	145,943	139,056
수당 단가	정액급식비	1,680	1,680	1,680
	직급보조비	14,880	11,400	8,040
	소계	16,560	13,080	9,720
합계		166,833	159,023	148,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상임위원등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원장(장관급)	173	179	185	191	198	924	185
부위원장(차관급)	165	170	176	182	189	883	177
상임위원(고위공무원)	462	479	496	513	532	2,482	496
합계	800	828	857	887	919	4,289	858

주: 1) 상임위원의 경우 3명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비상임위원 수당

- 비상임위원의 수당은 전기가스열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 합계액에서 기존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 합계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비상임위원(10명)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계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1,250만원으로 추계
 - 연간 참석 수당: 10명 × 15회 × 15만원 = 2,250만원 (5년간 총 1억 1,25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10명 × 15회 × 40만원 = 6,000만원 (5년간 총 3억원)
- 기존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7명)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계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6,250만원으로 추계¹²⁾
 - 연간 참석 수당: 7명 × 15회 × 10만원 = 1,050만원 (5년간 총 5,25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7명 × 15회 × 40만원 = 4,200만원 (5년간 총 2억 1,000만원)

[표 5] 수당 지급 대상 비상임위원 수, 회의 횟수 및 단가 가정

(단위: 명, 회, 천원)

		전기가스열위원회(개정안)	전기위원회(기존)
위원 수		10	7
회의 횟수		15	15
수당 단가	참석 수당	150	100
	안전검토 사례비	400	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비상임위원 수당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비상임위원 수당	30	30	30	30	30	15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전기가스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 합계액에서 기존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 합계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12) 전기위원회 위원의 수당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따른 단가를 준용함. 이하 동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억 9,800만원(연평균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계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 9,050만원으로 추계
 - 연간 참석 수당: 71명 × 2회 × 15만원 = 2,130만원 (5년간 총 1억 65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71명 × 2회 × 40만원 = 5,680만원 (5년간 총 2억 8,400만원)
- 기존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의 합계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300만원으로 추계
 - 연간 참석 수당: 31명 × 2회 × 10만원 = 620만원 (5년간 총 3,100만원)
 - 연간 안전검토 사례비: 31명 × 2회 × 20만원 = 1,240만원 (5년간 총 6,200만원)

[표 7] 수당 지급 대상 전문위원 수, 회의 횟수 및 단가 가정

(단위: 명, 회, 천원)

		전기가스열위원회(개정안)			전기위원회(기존)		
		법률분쟁 조정	소비자 (사용자)보호	전력계통 및 신뢰도	법률분쟁 조정	소비자 (사용자)보호	전력계통 및 신뢰도
위원 수		30	30	11	10	10	11
회의 횟수		2	2	2	2	2	2
수당 단가	참석 수당	150	150	150	100	100	100
	안전검토 사례비	400	400	400	200	20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60	60	60	60	60	298	6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부서 기준정원

[에너지정책실 기준정원]

(단위: 명)

부 서 명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운 영	계
	가	나										
에너지정책실	1								1			2
에너지정책관		1										1
에너지정책과			1		1	6	6	2	1			17
에너지효율과				1	1	5	2					9
에너지기술과				1	1	3	3	1				9
전력정책관		1										1
전력산업정책과			1		1	6	3	1	1			13
전력시장과				1	1	3	3	1				9
신산업분산에너지과				1	1	5	3					10
전력계통혁신과				1	1	3	2	1				8
재생에너지정책관		1										1
재생에너지정책과			1		1	3	4	1				10
재생에너지산업과				1	1	3	1	1				7
재생에너지보급과				1	1	4	2					8
수소경제정책관		1										1
수소경제정책과				1	1	5	2				1	10
수소산업과				1	1	4	2	1				9
에너지안전과				1	1	4	3	1				10
합계	1	4	3	10	13	54	36	10	3	0	1	13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 기준정원]

(단위: 명)

부 서 명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운 영	계
	가	나										
자원산업정책국		1										1
자원안보정책과			1		1	6	3					11
석유산업과				1	2	5	2	1		1		12
가스산업과				1	1	5	4	1				12
석탄산업과				1	1	3	2					7
광물자원팀					1	3	1					5
원전산업정책국		1										1
원전전략기획관		1										1
원전산업정책과			1		1	4	3	1				10
원전수출진흥과				1	1	3	2					7
원전환경과				1	1	5	3					10
원전지역협력과				1	1	3	2	1				8
원전수출협력과				1	1	3	2					7
합계	0	3	2	7	11	40	24	4	0	1	0	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단위: 명)

구 분	고위공무원단		3·4 급	4 급	4·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운 영	계
	가	나										
전기위원회 사무국			1			3	3	2				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원 변동 내역

(단위: 명)

직급	2020.8.					2021	2022	2023	2024	2025. 3.
	기존	행안부 이체	방통위 이체	순증	합계					
위원장(장관급)	0	0	0	1	1	1	1	1	1	1
부위원장(차관급)	1	0	0	0	1	1	1	1	1	1
고위공무원단	2	0	0	3	5	5	5	5	5	5
3·4급	1	1	0	1	3	3	3	3	3	3
4급	4	1	1	6	12	12	12	12	12	12
4·5급	3	2	0	6	11	11	11	12	12	13
5급	20	16	5	11	52	52	53	60	62	64
6급 이하	19	18	8	21	66	66	67	72	72	71
기타	1	1	0	1	3	3	3	4	4	4
합계	51	39	14	50	154	154	156	170	172	17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